

理事의 監視義務

禹 洪 九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 目 次 >

| | |
|----------------------|------------------------|
| I. 서설 | III. 우리 회사법상의 이사의 감시의무 |
| II. 미국회사법상의 이사의 감시의무 | 1. 의의 |
| 1. 감시의무의 근거 | 2. 평이사의 감시의무 |
| 2. 감시의무의 내용 | 3. 업무담당이사 및 감사의무 |
| 3. 이사의 시정조치 | IV. 결어 |

I. 序說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과 동시에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상법 제393조).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갖는 개개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 자체는 아니지만 이사회가 개별이사에 대한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사(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의 직무집행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감독할 의무(감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상법 제382조 2항).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만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 다른 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다.¹⁾

그러므로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이사회의 자기시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²⁾

특히 소규모폐쇄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거의 개척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회사의 일상적

1) 李哲松, 會社法講義, 博英社, 2000, 573면; 鄭東潤, 會社法, 法文社, 2000, 429면.

2) 石山卓磨, 「代表取締役の業務執行についての取締役の監視義務」, 倉澤康一郎教授還曆記念論文集, 「商法の判例と論理」, 1994, 241면.

인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평이사에게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하여야 이사회
감독기능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³⁾

그리고 대규모 공개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범위가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평이사나 업무담
당이사가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집행의 내용까지 개별적으로 감시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
산상황을 계속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⁴⁾

따라서 대규모 공개회사에서 대표이사들의 업무집행이 위법한 행위로 의심스러운 경우에 평
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능동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는가, 의무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감
시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등이 중심적인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미국법률가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의 제정에 주도적으
로 참여한 Eisenberg 교수의 견해와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의 규정내용을 비교, 분석
하여 대법원 판례와 통설이 인정하는 이사의 감시의무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반의
법적여건을 분석하여 입법적기준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⁵⁾

II. 미국회사법상의 이사의 감시의무

1. 감시의무의 근거

(1) 이사회 감독권

전통적으로 미국의 州會社法은 회사의 업무는 이사회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사회에 대한 업무집행권의 부여는 공개회사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⁶⁾. 이러한 비판에 따라 오늘날 거의 모든 주의 회사법은 회
사의 사업 및 업무는 이사회 지휘·감독 하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
다⁷⁾.

3) 神崎克郎, 「會社の法令遵守と取締役の責任」, 法曹時報 第34卷 4号, 1982, 867면.

4) 森本滋, 「經營判斷の當否に關する實問人の對應(その一)」, 取締役の法務 10号, 1994, 69-72면.

5) ① The American law institute(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nalysis and Recommendation, Proposed Final Draft, 1992(이하에서는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으로 약칭한다)

② M. A. Eisenberg, The Structure of Corporation, 139-48(1976)

③ 大法院 1985, 6, 25 判決, 84 다카 1954.

6) Dent, The Revolution in Corporate Governance ; The Monitoring Board and the Director's Duty of Care, 61 BOSTON Univ. L. Rev., 623, 625-29(1981).

7)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주회사법은 Del. Code Ann. tit.8 §141(a)(1994); N.Y.Bus.Corp.Law §701(1994); Cal. Corp. Code §300(a)(1985); MBCA, official Comment to §8.01(b)(1994)등이다.

이러한 州會社法の 규정은 이사회가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최고집행임원(Chief Executive Officer:CEO)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⁸⁾. 이사회가 최고집행임원에게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위임한 경우에도 이사회는 최고집행임원 등에 의하여 수행된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⁹⁾.

미국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은 이러한 회사법 규정보다 더 나아가 「공개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가 지명한 주요 최고집행임원이나 이들 최고집행임원 및 이사회가 업무집행권을 부여한 다른 임원 및 종업원은 이사회에의 직무 및 권한에 터잡아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1조).

그리고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은 이사회에의 기본적 직무범위로 ① 주요 최고집행임원의 선임, 정기적인 업무집행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필요한 경우에는 해임 ② 회사의 업무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업무집행의 감독 ③ 회사의 재무구조, 주요한 업무계획 및 실행상태의 심사, 필요한 경우에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동의 ④ 적정한 감사 및 기업의 회계원칙·관행의 변경에 따른 적용기준의 결정,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적용 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02조 a항)

이에 따라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에 의하면 공개회사 이사회에의 직무권한은 최고집행임원등이 행한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이지만 이사회 구성원인 개별이사도 이사회에의 감독권에 기초하여 최고집행임원 등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다.

(2) 이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이사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 정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¹⁰⁾. 주회사법의 이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한 규정은 모범사업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제8.30조 a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에서도 모범사업회사법의 규정을 토대로 하여 「이사 및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사의 직무수행의 방법도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사의 주의의 정도도 선량한 관리자와 동일한 주의 또는 이와 유사한 주의로써 직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1조 a항)¹¹⁾.

8) 여기에 최고집행임원에는 회사의 최고집행임원(CEO), 최고재무임원, 최고법무임원 및 최고회계임원 등이 포함된다.(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27(a))

9) MBCA, official Comment to §8.01(b)& §8.30(1994);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W.E.Knepper & D.A.Bailey, Liability of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115-16(1994).

10) 비록 회사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예컨대 Delaware州)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이 이사의 주의의무의 法源이 된다.(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er's note 1 to §4.01(a), 1st para, at 156)

11) 동조의 주석에 의하면 「선량한 관리자와 동일한 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사의 직무의 성질 및 범위가 법률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개개의 이사가 최고집행임원 및 이사 등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감시의무)의 내용은 해당이사의 구체적인 지위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의 주석에 따르면 “이사가 다른 이사 및 최고집행임원 등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직무집행의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수행했는가의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정」으로는 ① 이사가 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견 가능성 ② 그러한 문제가 중대한 것인가에 대한 예견가능성 ③ 주의의무가 문제된 時期에서의 사업의 상황 ④ 회사의 규모 ⑤ 다른 이사·임원·사용인·전문가·그 외의 자 이사회내의 위원회에 대한 신뢰가능성 ⑥ 이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時期에 있어서 해당 이사의 회사내의 지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¹²⁾.

2. 감시의무의 내용

(1) 감시의무와 조사의무

① 학설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의 설정을 주도한 Eisenberg 교수는 이사가 다른 이사 및 임원등의 업무집행의 감독의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해야 할 주의의무를 감시의무(The Duty to Monitor)와 조사의무(The Duty of Inquiry)로 분류하고 있다¹³⁾.

여기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활동을 합리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감시의무의 이론적근거로서 이사가 다른 이사 및 임원 등을 감독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이사회에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이들의 업무집행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이사의 감시의무는 전형적이며 직접적인 관찰(direct observ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¹⁴⁾가 이사회 또는 최고집행임원 이사회에

또는 회사의 내부 직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 이사는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내 이사(inside director)는 사외이사(outsider director)보다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mment to § 4.01(a), 1st para, at 152; MBCA official Comment to § 8.30(a), 1994).

12)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mment to § 4.01(a), 1st para, at 154.

13) Eisenberg, The Duty of Care of Corporate Directors and Officers, 51 Univ. of Pitt.L.Rev., 945, 948년.

14)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의 주석 및 Eisenberg 교수에 의하면 이사는 회사의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의 위임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사의 감시의무에 합치한다고 한다(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mment to § 4.01(a), 1st para, at 154; Eisenberg, op. cit(Duty

선임된 외부전문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방법이나 절차를 확립하여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이다¹⁵⁾.

그리고 이사의 조사의무라 함은 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지득한 정보중에서 다른 이사 및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부당한 행위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사(follow up reasonably)를 행할 의무를 말한다¹⁶⁾.

Eisenberg교수에 의하면 이사는 ① 최고집행임원 등의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감시할 필요는 없고 ② 또한 이들의 업무집행이 위법·부당행위로써 의심스러운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상시적이며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③ 회사의 사업활동상황을 상시적으로 적절하게 파악하여 ④ 회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가 이사회 또는 최고집행임원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강구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판례

Eisenberg교수의 전술한 내용 중에서 ①~③의 내용은 법원의 판례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¹⁷⁾.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선도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는 Francis v. United Jersey Bank사건의 판결에서 재보험계약에서 재보험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재보험중개법인의 명목적 이사에게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¹⁸⁾.

동 사건의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사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내용을 이해하여야 하고, 또한 이사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기초적 조건을 알아야 하며, 이사는 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득해야 할 지속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부정행위(misconduct)에 대한 감시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사의 감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사의 다른 이사 및 임원의 경영에 대한 조사의무는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상세한 조사(detailed inspection)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업무내용 및 업무방침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general monitoring)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감사할 의무는 없지만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무제표의 심사는 재무제표로부터 명백하게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

of Care), at 954).

15) Eisenberg, op. cit(Duty of Care), at 951-952; Mann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nd the Director's Duty of Attention : Time for Reality, 39 Bus. Law, 1477, 1484, 1499(1984).

16) Eisenberg, Ibid, at 956 ; Manning, Ibid, 1484, 1486.

17) W.M.Fletcher, Cyclopedia of the Law of Private Corporations, § §1048, 1078(1996).

18) 87 N.J.15, 432A.2d814, 821-23(1961) 재보험계약의 중개업을 하고 있는 A회사의 사장B와 부사장C가 원보험자로부터 예치한 보험료를 회사의 자금거래에 함께 보관하다가 대출명목으로 다액의 금전을 인출하여 회사가 도산하게 된 사건에서 법원은 B와 C의 모친이며 A회사의 대주주인 D이사에게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다.

그리고 Hoyer v. Meek사건의 판결에서도 「이사 및 임원은 다른 이어나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할 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하고,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사는 다른 이사와 임원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의무가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다¹⁹⁾.

③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Eisenberg교수의 이사의 감시의무의 내용은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동 원칙 제3.02조의 주석에서는 이사가 다른 이사와 임원등의 감시는 통상적으로 최고집행임원을 적극적으로 지휘하면 되지 자신이 직접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사는 감시대상이 되는 최고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의 결과를 평가하여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이 합리적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이사회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회사의 사업활동의 내용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²⁰⁾.

그리고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제4.01조 a항 1호에서도 「이사의 의무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사 또는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요청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그리고 여기에서 조사의 방법은 당해이사 또는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²²⁾.

19) 795 F. 2d 893, 896(1986). 신탁회사의 대표이사인A가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아들인 이사 B에게 위임하였는데 B가 과역의 채권투자로 인하여 회사가 도산상태에 빠진 사례이다.

20)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mment to § 3.02(a), at 89.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이사가이드북」(1994)은 이사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① 회사의 주요한 영업상·재정상의 목표, 전략 및 계획 ② 해당 회사 및 중요한 자회사·집행된 업무에 대한 영업상의 성과 및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이사는 회사의 경영자에게 회사의 사업 및 업무상황에 관한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Business Law,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1994 ed., 49 Bus. Lawyer, at 1243, 1250-51, 1253(1994)).

21) 이사의 주의의무에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3개 주의 회사법에서 두고 있다.(Alaska Stat. § 10.06. 450(b),(1994); Cal. Corp. Code § 309(a)(1995); 15Pa. Cons. Stat. § 1712(A),(1995)). 이러한 규정은 이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조사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사법회법원의 입법자에 의하면 이사가 적극적으로 조사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제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다(Cal. Corp. Code Legislative Committee Comments to § 3.09. 이에 대한 내용은 Stern, The General Standard of Care Imposed on Directors under the New California General Corporation Law, 23 U.C.L.A. L. Rev., at 1269, 1278-79(1976)).

22) 동형의 주석에의하면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이사가 조사의 요부나 조사의 정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사의 시간이나 비용, 사안의 성격, 사업의 규모, 회사의 사업장의 지리적 분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이다(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mment to § 4.01(a)(1)-(a)(2) at 164)

다만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이사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triggering circumstance)이 존재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²³⁾. 또한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제4.01조 a항 주석에서는 대규모회사의 이사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 감독권행사가 용이하도록 직무내용에 대한 계획 및 집행방법, 협조 절차 및 직무내용의 유효성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²⁴⁾. 이사가 이사회에 대하여 직무내용의 제공 수단으로는 해당 이사의 직무내용이 법령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보고절차(internal reporting process)²⁵⁾, 정보제공 계획(information program), 제4.01조 b항에 따른 적절한 직무의 위임²⁶⁾, 회계사, 변호사 및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이용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²⁷⁾.

23)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동 주석에 의하면 전형적 대규모회사에서 이사회가 임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나 보고서 등을 수령하고 또한 구두에 의한 보고를 받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무제표나 보고서 등을 심사한다는 것은 이사가 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감독해야 할 의무와 합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는 그 사업활동의 내용에 이 명백한 위법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재무제표나 보고서 등의 기초자료에 까지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mment to § 4.01(a)(1)-(a)(2) at 163).

24)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이사가이드북」은 모두 이사에게 ① 최근의 회사의 사업상·재정상의 업적,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 사업분야별 재무제표, 법령 및 회사의 방침의 준수여부, 중요한 소송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보제공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② 회사가 적용받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러한 대책 등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가를 배제하여야 한다(ABA, op. cit., at 1250-51).

이와 관련하여 ALI의 Principles와 Eisenberg교수에 의하면 이사회에 일정한 직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한 이사 및 임원은 이사회가 자신들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절차 및 방법 등을 갖추어야 한다(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mment to § 4.01(a), 1st para., at 153; Eisenberg, op. cit.(Duty of Care), at 955-56).

25) ① 「법령준수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내부보고절차」가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Graham v. Allis - Chalmers Manufacturing Co. 사건의 판결(41Del. Ch. 78, 188 A. 2d 125(1963))에서는 「이사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행위가 발생할 때까지 직무를 수입한 이사 및 임원등을 신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의의무는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직무집행에 의심스러운 행위가 발생했 것이라는 의혹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는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은 동판결은 30년전의 사례로써 주의의무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이사의 의무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는 요소이고, ABA의 「이사가이드북」을 근거로 하여 업무집행자의 법령준수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넓게 인정되고 있는 실무관행이라 주장한다(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mment to § 4.01(a)(1)-(a)(2) at 165-166)

② 이와 관련하여 회계에 관한 내부통제(internal accounting controls)시스템의 존재 및 유효성에 대해서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Manning, op. cit., at 1484; Dooley, Two Models of Corporate Governance, 47Bus. Lawyer, at 461, 486(1992)).

26)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제4.01조 b항 전단은 「법을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최종적인 감독책임은 전제로 하여 이사회는 그의 직무(감독의무 포함)를 이사회내의 위원회 또는 이사, 임원, 사용인, 전문가 등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사회에 직무위임은 이사회에 최종감독책임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감독권 자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mment to § 4.01(a)(1)-(a)(2) at 171-172; Eisenberg, op. cit(Duty of Care), at 945).

27) 예컨대 감사위원회에 외부회계감사의 결과, 감사보고서 및 중요한 내부감사보고서의 심사, 회계내부통제의 검토 등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본다.(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mment to § 4.01(a)(1)-(a)(2) at 166).

④ 학설 및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에 대한 비교·분석

Eisenberg교수의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주장의 내용과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에서의 규정내용을 비교·분석하면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이사 및 최고집행임원들의 직무내용에 관한 정보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이사회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사가 독자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를 할 필요없이 그 정보를 신뢰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²⁸⁾.

그러나 이사에게 이러한 정보등을 무조건 신뢰할 것을 인정하게 하면 이는 이사회내의 감독기능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제4.01조 a항 2호에서는 이사는 업무집행 또는 감시권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원칙 제4.02조 및 제4.03조에 따른 자료 및 다른 업무집행자의 직무수행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이에 따라 제4.02조 및 제4.03조에서 자료 및 타인의 직무집행의 결과에 대한 이사의 신뢰의 요건으로 「이사는 자신의 의무이행 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in good faith) 행위하고 다른 직무집행자의 직무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가 정당한 근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는 보호된다. 여기에서 정당한 근거에 입각하고 있는 신뢰요건으로는 ① 해당 이사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 및 회사의 공동지배하에 있는 회사의 이사, 임원, 사용자 ② 해당 이사가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제공한 정보, 의견, 보고, 설명의 내용, 결정내용, 판단 등은 이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의 주석에 의하면 이사회가 최고집행임원들의 책임범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최고집행임원들의 보고내용에 위법·부당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최고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보고가 없더라도 최고집행임원등이 의무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³¹⁾.

따라서 이사는 최고집행임원등의 보고내용에 위법·부당이 의심스러운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들이 작성제공한 정보, 의견, 보고, 설명, 결정,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검사하거나 새로이 조사할 필요없이 그 정보를 신뢰하여도 된다³²⁾.

28) Manning, op. cit., at 1487-88; Hamilton, Reliance and Liability Standards for Outside Directors, 24 Wake Forest L. Rev., 5, 19-29(1989).

29) ALI의 Principles 제 4.01b항 후단은 이사는 본조에 근거하여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위임된 직무에 관하여 그 직무의 내용 및 절차가 제4.02조 및 제4.03조에 입각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및 타인의 직무집행을 신뢰하여도 좋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제4.03조는 이사회내의 위원회에 대한 이사의 신뢰에 대하여 4.02조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회사법은 제4.02조 및 제4.03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Del. Code Ann. tit. 8 §141(e); N.Y.Bus.Corp.Law §717(a); Cal. Corp. Code §309(b); MBCA §8.30(B)(C)).

31)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Comment to §4.01(B), at 171

32) ALI, Ibid, at 194 ; MBCA Official Comment to §8.30(a)

3. 이사의 시정조치

이사가 이사회에 감독권에 근거하여 다른 이사 등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 또는 조사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사 등의 업무집행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감시의무이행의 실현수단으로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이다.

미국의 판례에서는 이사가 다른 이사 및 임원등의 업무집행이 위법·부당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³³⁾.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인 Francis v. United Jersey Bank 사건에서 '이사가 다른 이어나 임원 등의 위법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저지하게 하거나, 회사가 그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당해 이사가 사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는 변호사의 조언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당해 이사는 그 위법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³⁴⁾.

그러나 Eisenberg 교수 및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에서는 감시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사의 시정조치의 부여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의 제7.18조(이사의 손해배상책임규정)의 주석에서 이사의 의무위반과 회사가 입은 손해간에 사실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³⁵⁾, 이사가 이사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공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억지력을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³⁶⁾.

따라서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에서도 이사가 다른 이사 및 임원등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Ⅲ. 우리 회사법상의 이사의 감시의무

1. 의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회사법에서도 이사회에 구성원인 이사는 선관주의의무의 하나의 유형으로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만이 아니라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등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의 입장이다³⁷⁾.

33) ALI, Ibid, Reporter's note 4 to § 7.18, at 234-35; Fletcher, op. cit., § 1058.

34) 432A. 2d 823.

35) ALI, op. cit., Comment to § 7.18, at 226.

36) ALI, Ibid.

이러한 이사의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는 소규모 폐쇄회사에서 감독기능의 효율성이 발휘 되는 제도이지만 판례 및 통설의 입장은 어느정도 대규모회사에서도 이사의 감시의무는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의 전반에 미친다고 해석한다³⁷⁾.

그러나 대규모회사에 있어서 평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독자적으로 감시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규모 또는 이사가 회사내에서 갖는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감시의무의 내용이 이사에게 가혹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³⁸⁾.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할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동판결에서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으로 ① 평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행한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②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태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이사가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알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적절하게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회사법에 규정된 제도들로서 업무집행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⁴¹⁾.

따라서 대규모회사의 평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는 있지만,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적절하게 파악해야 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²⁾.

2. 평이사의 감시의무

(1) 감시의무의 인정여부

37) 李哲松, 前掲書, 573面; 大法院 1985. 6. 25 判決, 84 다카 1954.

38) 坂田桂三, 「取締役會の監督的機能」, 『現代商法的重要問題』, (田中誠二先生米壽紀念論文集), 204面; 龍田節, 新版注釋會社法(6), 有斐閣, 1987, 315-16面.

39) 山田純子, 「取締役の監視義務」, 『會社の健全性確保 取締役の責任』, 有斐閣, 1997, 237面.

40) 大法院 1985. 6. 26 判決 84 다카 1954.

41) 神崎克郎, 「取締役制度論」, 中央經濟社, 1981, 114-115面; 龍田節, 前掲書, 332面.

42) 河和哲雄佳·河和玄逸, 「取締役·監査役の第三者責任」, 商事法務研究會, 1988, 179, 240面.

대규모회사의 회사경영은 대표이사와 상근의 업무담당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상근의 평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상의 결의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뿐이고 일상적인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이사에게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와 동등한 차원의 감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과거의 일부 학설에서는 평이사는 이사회를 통해서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사회에 결의에 근거하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대해서까지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한 부정설의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였지만⁴³⁾, 오늘날의 통설·판례는 평이사의 감시의무를 부정하게 되면 이사회에 감독권이 형해화하게 되므로 회사법이 회사의 업무에 관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구분하여 결정기관이 집행기관을 감독하게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하게 된다. 따라서 평이사도 이사회에 구성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거나, 또는 이사의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를 근거로 평이사의 일반적·능동적 감시의무를 인정하고 있다⁴⁴⁾.

(2) 감시의무의 내용

① 감시정도

평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직무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에 한해 감시의무를 부담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회사업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느냐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소극설에서는 평이사도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직무위반 행위를 명백히 알게된 경우에는 이사회에 상정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평이사는 업무담당이사와는 달리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계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의 임무까지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⁴⁵⁾.

그러나 적극설에서는 평이사는 다른 이사의 직무위반을 알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파악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⁴⁶⁾.

② 감시방법

평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집행상황을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심사할 수

43) 大阪俗公雄, "取締役の責任", 「株式會社法講座」, 第3卷, 121面.

44) 李哲松, 前掲書, 575面; 鄭東潤, 前掲書, 430面.

45) 菅原菊志, "現代株式會社における取締役の地位とその監視義務", 「企業法研究十五周年記念論文集」, 企業法論社, 1964, 122面.

46) 神崎克郎, "取締役の注意義務", 商事法務, 第847號, 2-6면; 山田純子, 前掲論文, 238面.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⁴⁷⁾.

여기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대표이사 등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일본상법 제260조 3항),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 의무(상법 제412조의 2),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이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⁴⁸⁾.

평이사는 이사회에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제출된 자료나 각종의 보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심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등의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③ 조사의무

평이사가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조사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느냐가 문제로 된다.

이와 같은 평이사의 조사의무에 대하여 Eisenberg교수 및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에서와 같이 평이사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평이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합리적인 조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평이사는 이러한 조사절차를 통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평이사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⁴⁹⁾.

3. 업무담당이사 및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1) 업무담당이사의 감시의무

업무담당이사는 평이사와는 달리 이사회 구성원의 지위와 업무집행자로서의 지위를 병유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담당이사가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는 이사회 구성원의 지위에 유래하는 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⁵⁰⁾, 그 범위내에서는 평이사의 감시의무와 동일하다⁵¹⁾.

다만, 평이사에 비하여 업무담당이사는 업무집행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표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감시의무의 위반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⁵²⁾.

47) 神崎克郎, 前掲書, 119-120面.

48) 山田純子, 前掲論文, 238面.

49) 上私克郎 外, 「經營判斷原則の日本の解明(中)」, 取締役の法務, 第7号, 50-54面.

50) 菅原菊志, 前掲論文, 120-121面.

51) 河和哲雄·河和玄逸, 前掲書, 205-206面.

52) 近藤光男, 「新版注釋會社法(6)」, 有斐閣, 1987, 282-283面.

그리고 업무담당이사간에는 회사의 내부직제상 지휘명령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지위에 있는 업무담당이사는 평이사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될 것이다.⁵³⁾

(2)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상법 제389조 3항)이 있으므로 업무담당이사 및 상업사용인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와 평이사의 감시의무는 내용면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⁵⁴⁾

그러나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는 이사회 구성원의 지위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⁵⁵⁾.

이 점에서는 평이사의 감시의무와 동일하지만,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대표권이 없는 이사에 비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정보의 취득이 아주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감시의무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⁵⁶⁾.

그리고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개별적으로 위임하여 수입한 대표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고유한 지위에 기초하여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⁷⁾.

IV. 결 어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미국의 ALI의 「회사회배구조의 원칙」 및 Eisenberg교수의 견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에 대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ALI의 「회사회배구조의 원칙」은 이사가 다른 이사 및 임원 등이 감시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해당 이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여섯가지 유형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사의 행위가 위법

53) 酒卷俊雄, "取締役の會社に対する責任", 「取締役の責任と會社支配」, 成文堂, 1967, 8面.

54) 近藤光男, 前掲書, 282面.

55) 菅原菊志, 前掲論文, 120面; 近藤光男, 上掲書, 282面.

56) 菅原菊志, 上掲論文, 123面; 近藤光男, 上掲書, 282-283面.

57) 本間 輝雄, 「注釋會社法(4)」, 有斐閣, 1968, 447面.

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으로 애매하고 포괄적인 판단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사의 감시의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이나 판례 및 Eisenberg교수는 평시에 이사는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를 부여할 의무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경우에는 어떠한 감시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는 아무런 제시가 없으나 미국의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및 Eisenberg교수는 이사가 다른 이사 및 임원 등의 업무집행 등의 감시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판례 및 Eisenberg교수의 견해는 우리나라의 공개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감시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參考文獻〉

- 李哲松, 會社法講義, 博英社, 2000.
- 鄭東潤, 會社法, 法文社, 2000.
- 本間 輝雄, 「注釋會社法(4)」, 有斐閣, 1968.
- 近藤光男, 「新版注釋會社法(6)」, 有斐閣, 1987.
- 神崎克郎, 「取締役制度論」, 中央經濟社, 1981.
- 龍田節, 新版注釋會社法(6), 有斐閣, 1987.
- 酒卷俊雄, “取締役の會社に対する責任”, 「取締役の責任と會社支配」, 成文堂, 1967.
- 上私克郎 外, 「經營判斷原則の日本的解明(中)」, 取締役の法務, 第7号.
- 神崎克郎, “取締役の注意義務”, 商事法務, 第847號.
- 菅原菊志, “現代株式會社における取締役の地位とその監視義務”, 「企業法研究十五周年記念論文集」, 企業法論社, 1964.
- 大阪俗公雄, “取締役の責任”, 「株式會社法講座」, 第3卷.
- 河和哲雄佳・河和玄逸, 「取締役・監査役の第三者責任」, 商事法務研究會, 1988.
- 山田純子, “取締役の監視義務”, 「會社の健全性確保 取締役の責任」, 有斐閣, 1997.
- 坂田桂三, “取締役會の 監督的 機能”, 「現代商事法的重要問題」, (田中誠二先生米壽紀念論文集).
- 森本滋, 「經營判斷の當否に關する實問人の對應(その一)」, 取締役の法務 10号, 1994.
- 神崎克郎, 「會社の法令導守と 取締役の責任」, 法曹時報 第34卷 4号, 1982.
- 石山卓磨, 「代表取締役の業務執行についての取締役の監視義務」, 倉澤康一郎教授還曆紀念論文集, 「商法の判例と論理」, 1994.
-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Business Law,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1994 ed., 49 Bus. Lawyer, 1994.
- Dent, The Revolution in Corporate Governance ; The Monitoring Board and the Director's Duty of Care, 61 Boston Univ. L. Rev., 1981.
- Dooley, Two Models of Corporate Governance, 47Bus. Lawyer, 1992.
- Eisenberg, The Duty of Care of Corporate Directors and Officers, 51 Univ. of Pitt.L.Rev.
- Hamilton, Reliance and Liability Standards for Outside Directors, 24 Wake Forest L. Rev., 5, 1989.
- M. A. Eisenberg, The Structure of Corporation, 1976.
- Mann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nd the Director's Duty of Attention : Time for Reality, 39 Bus. Law, 1984.

Stern, The General Standard of Care Imposed on Directors under the New California General Corporation Law, 23 U.C.L.A. L. Rev., 1976.

The American law institute(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nlysis and Recommendation, Proposed Final Draft, 1992.

W.M.Fletcher, Cyclopedia of the Law of Private Corporations, 1996.

W.E.Knepper & D.A.Bailey, Liability of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1994.

SUMMARY

A Study on the Director's Duty to Monitor other Directors

Woo, Hong-Gu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Law, KonKuk University)

In general, Korea Corporation statute endow right of making decision business and monitoring other directors. And a director has a duty to the corporation to perform the perform in good faith care in Korea Corporate Law.

Management of the business of a publicly held corporation should be conducted by or under the supervision of such principal senior executives as are design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by those officers and employees to whom the management functions is delegated by the board or those executives, subject to the functions and powers of the board in U.S Corporation Law.

A director or officer has a duty to the Corporation to perform the director's of officer's function in good faith, in a manner that they reasonably belie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nd with the care that an ordinarily position and under similar circumstances.

In a result ALI, 「Corporate Governance」 and Common Law or Opinion of professor Eisenberg, their regal theory produce standard of legislation to publicly held corporation in Korea Corporation Law.